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박영준	68011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현로
이상준	7203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김선화	6912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10길
김미영	810902-*****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윤준삼	7602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6번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박영준	2013.6.28. 1건(보험료 0.3백만원)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김OO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상준	2012.11. 5. ~ 2013.10.31. 기간 중 15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158명에게 총 10.6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선화	실제 보험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5.2.23. △△△보험(주)로부터 입원 보험금 168만원을 편취함	보험업법 제86조,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김미영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보험사고가 없었는데도 피해를 과장하여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5.2.25. △△△보험(주)로부터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편취함	보험업법 제86조,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윤준삼	2012. 8. 16. ~ 2014. 5. 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OO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7.6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함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 11. 29.(화)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제1회의실(9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동현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